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심사보고서

2021. 12. 21.

운영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1년 12월 8일

나. 발 의 자: 장순원·정선희 의원 외 7명

다. 회부일자: 2021년 12월 8일

라. 상정일자: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21. 12. 13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정선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사항 반영 (안 제19조)
- 의안의 제출·발의 관련 규정 신설(안 제19조의2)
- 특별위원회 운영사항 개정 (안 제31조)
- 그 밖의 인용조문 정비 (안 제20조, 안 제21조, 안 제24조, 안 제36조)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옥연)

### 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(2022.1.13. 시행)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운영 등 지방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,

### ○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는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정례회의 집회일, 운영 등을 법률로 규정했던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도록 개정되어 안 제19조제1항에 정례회의 개최 및 회기, 임시회의 소집요건을 규정하고,
- 안 제19조의2는 의안의 발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 제66조에 따라 의안 발의 정족수를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의원으로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」 제10조(의안의 제출·발의)에서 규정했으나, 개정법에서 발의 정족수를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신설한 것으로 보임.
- 안 제31조는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에서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“일시적”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으나, 개정 법에서는 “일시적”이라는

요건을 삭제한 바, 이를 반영하여 조례안 제31조제4항을 삭제함으로써 필요시 상시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또한,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가 현행 법에서는 임의사항이었으나 의무화되고, 사전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

#### 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, 의안발의 정족수 규정, 특별위원회의 운영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적기에 반영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됨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장순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28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: 2021년 12월 8일

발 의 자: 장순원·정선희 의원 외 7명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사항 반영  
(안 제19조)

나. 의안의 제출·발의 관련 규정 신설(안 제19조의2)

다. 특별위원회 운영사항 개정 (안 제31조)

라. 그 밖에 인용조문 정비 (안 제20조, 안 제21조, 안 제24조, 안 제36조)

## 3. 개정안 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다. 입법예고(2021.12. 1.~12. 5. / 5일 간)결과 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44조, 제45조 및 제47조”를 “제53조, 제54조 및 제56조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 이 때 제1차·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.
2.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때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

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2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,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위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.

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”를 “정례

회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법 제134조의 규정”을 “법 제150조”로, “밖의 부의안건”을 “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제41조제1항의 규정”을 “법 제49조”로, “법 제127조의 규정”을 “법 제142조”로, “밖의 부의안건”을 “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법 제72조”를 “법 제84조”로 한다.

제31조제3항 중 “윤리와 자격”을 “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”로 한다.

제36조제3항제3호 중 “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”를 “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”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법 제117조”를 “법 제131조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회기) 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4조, 제45조 및 제47조에 따른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·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.</p> <p>2.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제19조(회기) ① ----- ----- 제53조, 제54조 및 제56조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. 이 때 제1차·제2차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.</p> <p>2.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 이 때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.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9조의2(의안의 제출·발의)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의원은 4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,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</p>

찬성위원을 구분하되, 해당 조례  
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위원의  
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. 다만,  
발의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 
는 대표발의위원 1명을 명시하  
여야 한다.

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  
기시작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 
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그  
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 
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.

제20조(정례회의 집회일) 법 시행  
령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  
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 
그 날이 토요일·공휴일인 때에  
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2. (생략)

제21조(정례회의 안건처리) ① 제1  
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의  
규정에 따라 결산의 승인 및 그  
밖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  
다.

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  
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사

제20조(정례회의 집회일) 정례회-  
-----  
-----.  
-----  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제21조(정례회의 안건처리) ① --  
----- 법 제150조---  
----- 그  
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 
안건-----  
--.

② ----- 법 제49  
조-----



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 
규정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 
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  
한다.

제24조(회의록) 의회는 법 제72조  
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  
의록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회  
의 규칙에 따른다.

제31조(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  
원수) ①·② (생략)  
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와 자격  
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  
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  
다.

④ ~ ⑦ (생략)

제36조 (구청장 등의 출석요구) ①  
· ② (생략)  
③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 
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  
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3.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  
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
4. (생략)
5. 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행정

----- 법 제142조-----  
-----  
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  
치는 안건-----  
-----

제24조(회의록) ----- 법 제84조---  
-----  
-----

제31조(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위  
원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
③ ----- 윤리강령과 윤  
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-----  
-----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제36조 (구청장 등의 출석요구) ①  
· ② (현행과 같음)  
③ -----  
-----

1. 2. (현행과 같음)
3.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-----
4. (현행과 같음)
5. 법 제131조-----

기관장	-----
6. (생략)	6. (현행과 같음)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